

제2604호
2018. 10. 24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
전화: 3396-4952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- 제2018-112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
- 제2018-113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
- 제2018-114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고시 4

● 공 고

- 제2018-715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가를 위한 공람공고 5
- 제2018-717호 : 도시관리계획(주요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 6
- 제2018-719호 :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7
- 제2018-720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

● 회 보

- (주) 성원에드피아 제2018-1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10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12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2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주교동 168-3	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63-1	2018.10.24.	창경궁로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4.22.	조선5대 궁궐의 하나인 창경궁 명칭 인용
신당동 409-17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다길 41	2018.10.24.	동호로20다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13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 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연번	도로명주소	지번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60-15	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776	2018.10.24.	건물말소
2	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5길 23-8	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74-5	2018.10.24.	건물말소
3	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63-1	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168-3	2018.10.24.	건물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14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54호(2017. 7. 1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4-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대
3. 정비구역의 면적 : 2,128.9㎡ (대지 1,363.1㎡, 정비기반시설 765.8㎡)
 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시행자 : 삼보개발 대표 김학진, 박원희
 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7길 13, 303호(기종빌딩)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
5.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 : 2018. 10. 24.(예정)
6. 변경 사유
 - 주용도 변경 : 업무시설(오피스텔) → 생활숙박시설
7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4)에 비치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715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·명칭 및 시행기간

- 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다. 사업의 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솔라고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규풍
- 주 소 :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곶이길 92-234

3. 공람요지

- 가. 사업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위 치 :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2-1 일대
- 다. 시행면적 : 3,507.10㎡
- 라. 건축계획 : 지하6층/지상14층, 연면적 32,372.44㎡, 오피스텔/생활숙박시설
- 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571.90㎡

4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 (☎02-3396-5754)

5. 공람기간 : 2018. 10. 24. ~ 2018. 11. 7.(14일간)

6. 관계도서 : 세운 6-2-24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나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 또는 이메일(jihoonseon@junggu.seoul.kr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717호

도시관리계획(주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77호(2005.03.17.)로 최초 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78호(2006.05.11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우리구 주교동 일대 “주교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같은법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을 입안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주교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E-mail : eveiy@junggu.seoul.kr 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2018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열람기간 :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심재생과 (TEL : 02-3396-5772 / FAX : 02-3396-8777)

다. 열람내용 : 주교 지구단위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주교 지구단위계획구역	중구 주교동 일대	100,210	-	100,210	서고 제2005-77호 (2005.03.17)	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게재생략
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게재생략

4)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: 게재생략

라. 변경사유

-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의 해제 등에 따라 기존 특별계획구역내에 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함
- 소규모 필지 등 기존의 도시규모를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 및 획지계획 해제 후 공동개발계획으로 대체하고 도심산업 활성화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용도계획의 변경 등 재정비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관리계획 수립하고자 함

마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)

바. 본 변경(안)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, 향후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-719호

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부의 안건 : 조례안 4건, 출연안 2건, 동의안 2건, 기타안건 2건

구분	부 의 안 건 명	주관부서 (연락처)
조례안	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문화관광과 (3396-4606)
조례안	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사회복지과 (3396-5392)
조례안	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	도시디자인과 (3396-5963)
조례안	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주차관리과 (3396-6264)
출연안	2019년도 (재)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	문화관광과 (3396-4606)
출연안	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	세무1과 (3396-5102)
동의안	전국 사회연대경제 자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	일자리경제과 (3396-5383)
동의안	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	위생과 (3396-5663)
의견청취안	순화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-2지구 정비지구(정비계획)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	도심재생과 (3396-5772)
보고의견	(장기)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보고	도심재생과 (3396-5754)

나. 기 타

-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(☎3396-493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-720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8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실시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유주차구획의 운영(제5조의3)
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 시행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차관리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 전화: 3396-6264, FAX: 3396-8873, 메일: rokaff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고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공유주차구획 운영)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(이하 “공유주차구획”이라 한다)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5조의3(공유주차구획 운영)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(이하“공유주차구획”이라 한다)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② 그 밖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

회 보

◎ (주)성원애드피아 고시 제2018 - 1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 10. 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 3. 27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 되고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5-67호(2015. 8. 10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5-92호(2015. 11. 2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62호(2016. 3. 3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-44호(2016. 5. 10.), 제2018-34호(2018. 4. 4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8-53호(2018. 5. 16.)로 공사완료 고시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8-71호(2018. 6. 20.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 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0월 일
사업시행자 (주)성원애드피아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정비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-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)

-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315번지 일대
- 면적 : 747.0㎡ (대지 585.9㎡, 정비기반시설 161.1㎡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(주)성원애드피아 대표이사 정대원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1길 6 (☎02-6262-5720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5. 11. 25. (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8. 6. 20.)

5. 공사완료 고시일 : 2018. 5. 16.

6. 이전고시 내역

- 토지

구분	지번	지목	면적(㎡)	비고
대지	충무로4가 315	대	585.90	
도로	충무로4가 315-1	도	161.10	무상귀속
합계			747.00	

- 건축물

구분	동수	층수	대지면적(㎡)	연면적(㎡)	비고
숙박시설/근린생활시설	1동	지상 12층/지하 5층	585.90	6,011.90	

7. 관계서류 : (주)성원애드피아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임